



시 보



시보는 공문서의
효력을 갖는다.

제1443호 2020. 6. 8.(월)

공 고

- 도시계획시설(유달근린공원)사업 사업인정(의제)에 관한 공시송달 공고---- 2
- 도시계획시설(갯바위근린공원)사업 사업인정(의제)에 관한 공시송달 공고----- 3
- 도시계획시설(완충녹지)사업 사업인정(의제)에 관한 공시송달 공고----- 4
- 목포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----- 5
- 목포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----- 10

회람							
----	--	--	--	--	--	--	--

발행 : 목포시 편집 : 공보과 ☎ 061-270-8539

목포시 공고 제2020 - 937호**도시계획시설(유달근린공원)사업 사업인정(의제)에 관한 공시송달 공고**

목포시 죽교동 산39-21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(유달근린공원)사업 [사업명 : 목포 유달근린공원 조성 사업] 실시계획에 대해서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,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,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였으나 토지소유자 주소불명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통지가 불가하여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4조 및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2020년 6월 8일
목 포 시 장

가. 사업시행지 위치 : 목포시 죽교동 산39-21번지 일원

나. 사업의 종류 및 명칭

- 종 류 : 도시계획시설(유달근린공원)사업
- 명 칭 : 목포 유달근린공원 조성 사업

다. 사업의 규모 및 면적

- 유달근린공원 271,396㎡(둘레길 3,947.1㎡, 원형보존녹지 267,448.9㎡)

라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
- 성명: 목포시장
- 주소: 목포시 양을로 203

마.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

- 실시계획인가일 ~ 2025. 6. 30

바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, 물건 조서 및 그 소유자 성명·주소(송달대상자)

- 토지조서: 붙임/물건조서: 붙임 편입토지 상의 물건 일체

사. 열람기간 : 2020. 6. 8. ~ 2020. 6. 22.(15일간)

아. 열람장소 및 의견제출장소 :

- 전라남도 목포시 양을로 203, 목포시청 도시계획과(☎061-270-8414)
공원녹지과(☎061-270-3634)

자. 기타

- 의견청취 열람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4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받은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.

목포시 공고 제2020 - 938호**도시계획시설(갯바위근린공원)사업 사업인정(의제)에 관한 공시송달 공고**

목포시 상동 1080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(갯바위근린공원) 사업 [사업명 : 목포 갯바위근린공원 조성 사업] 실시계획에 대해서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,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21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,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였으나 토지소유자 주소불명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통지가 불가하여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4조 및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2020년 6월 8일
목 포 시 장

가. 사업시행지 위치 : 목포시 상동 1080번지 일원

나. 사업의 종류 및 명칭

- 종 류 : 도시계획시설(갯바위근린공원)사업
- 명 칭 : 목포 갯바위근린공원 조성 사업

다. 사업의 규모 및 면적

- 갯바위근린공원 295,512.1㎡(둘레길 4,691.3㎡, 원형보존녹지 290,820.8㎡)

라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
- 성명: 목포시장
- 주소: 목포시 양을로 203

마.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

- 실시계획인가일 ~ 2025. 6. 30

바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, 물건 조서 및 그 소유자 성명·주소(송달대상자)

- 토지조서: 붙임/물건조서: 붙임 편입토지 상의 물건 일체

사. 열람기간 : 2020. 6. 8. ~ 2020. 6. 22.(15일간)

아. 열람장소 및 의견제출장소 :

- 전라남도 목포시 양을로 203, 목포시청 도시계획과(☎061-270-8414)
공원녹지과(☎061-270-3634)

자. 기타

- 의견청취 열람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4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받은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.

목포시 공고 제2020 - 943호**도시계획시설(완충녹지)사업 사업인정(의제)에 관한 공시송달 공고**

목포시 연산동 729-1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(완충녹지)사업 [사업명 : 연산동 완충녹지3호(행남사~삽진산단)조성 공사] 실시계획에 대해서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,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,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였으나 토지소유자 주소불명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통지가 불가하여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4조 및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2020년 6월 8일
목 포 시 장

■ 공시송달공고 내용

가. 사업시행지 위치 : 목포시 연산동 729-1 일원

나. 사업의 종류 및 명칭

- 종 류 : 도시계획시설(완충녹지)사업
- 명 칭 : 연산동 완충녹지 3호(행남사~삽진산단)조성공사

다. 사업의 규모 및 면적

- 완충녹지 96,789㎡(완충녹지조성 7,051㎡ - 녹지조성 4,704㎡, 원형보존 2,347㎡)

라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
- 성명: 목포시장(공원녹지과장)
- 주소: 목포시 양을로 203

마.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

- 실시계획인가일 ~ 2025. 6. 30.

바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, 물건 조서 및 그 소유자 성명·주소(송달대상자)

- 토지조서: 붙임/물건조서: 붙임 편입토지 상의 물건 일체

사. 열람기간 : 2020. 6. 8. ~ 2020. 6. 23.(15일간)

아. 열람장소 및 의견제출장소 :

- 전라남도 목포시 양을로 203, 목포시청 도시계획과(☎061-270-8414)
공원녹지과(☎061-270-3514)

자. 기타

- 의견청취 열람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4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받은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.

목포시 공고 제2020 - 950호**입 법 예 고**

『목포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』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0. 6. 8.

목 포 시 장

1. 개정이유

- 지역상품권의 부정유통을 방지하고 지역 내 소비유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자지역화폐의 개인별 연간 할인 구매한도 내용 추가

2. 주요내용

- 전자지역화폐의 개인별 연간 할인 구매한도 내용 추가

3. 개정조례안 : 별첨**4. 신·구조문대비표 : 별첨****5. 예산 수반사항 : 해당없음****6.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: 해당없음****7. 규제심사(심의)대상 여부 검토 : 해당없음****8. 입법예고 : 2020. 6. 8.(월) ~ 2020. 6. 29.(월) / 21일간****9. 사전협의(승인)사항 : 해당없음****10. 기타 참고사항 : 해당없음**

11. 의견제출

-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2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목포시장(지역경제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의견제출 사항

-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-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에는 법인·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- 기타 참고사항

나. 의견제출처 : 58613, 전남 목포시 양을로 203(용당동) 목포시청 지역경제과
다. 제출방법 : 우편, 팩스(061-270-3592), 직접방문 등

12. 기타사항

-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홈페이지(<http://www.mokpo.go.kr>)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목포시청 지역경제과(061-270-8785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목포시 조례 제 호

목포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목포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1항 단서를 삭제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종이지역화폐의 할인구매는 개인의 경우 연간 400만원을 초과 할 수 없고, 전자지역화폐는 연간 할인 구매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. 법인 및 개별가맹점 상인의 경우 할인구매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.

<신, 구조문대비표>

현행	개정안
제7조(할인 및 수수료) ① 시장은 화폐의 판매활성화를 위하여 화폐 권면 금액의 100분의 6(설치명절 전후 시장이 정하는 기간에는 100분의 10)의 범위에서 할인하여 판매하도록 할 수 있다. <u>다만, 화폐의 할인가액은 개인의 경우 연간 4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, 법인 및 개별가맹점 상인의 경우 할인가액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.</u> <u><신 설></u>	제7조(할인 및 수수료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. <u><단서 삭제></u> ② <u>종이지역화폐의 할인가액은 개인의 경우 연간 400만원을 초과할 수 없고, 전자지역화폐는 연간 할인 구매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. 법인 및 개별가맹점 상인의 경우 할인가액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.</u>

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☐ 조 례 명 : 목포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

○ 성명(단체명) : (서명 또는 인)

○ 주 소 :

○ 전 화 번 호 :

조례안 항목별 내용	찬성여부		의견(사유)	기타 참고사항
	찬성	반대		

목포시 공고 제2020 - 951호**입 법 예 고**

『목포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』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0. 6. 8.

목 포 시 장**1. 개정이유**

- 지역상품권의 부정유통을 방지하고 지역 내 소비유도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개인별 전자지역화폐의 월간·연간 구매한도 내용 추가

2. 주요내용

- 개인별 전자지역화폐의 월간·연간 구매한도 내용 추가

3. 개정규칙안 : 별첨**4. 신·구조문대비표 : 별첨****5. 예산 수반사항 : 해당없음****6.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: 해당없음****7. 규제심사(심의)대상 여부 검토 : 해당없음****8. 입법예고 : 2020. 6. 8.(월) ~ 2020. 6. 29.(월) / 21일간**

9. 사전협의(승인)사항 : 해당없음**10. 기타 참고사항 : 해당없음****11. 의견제출**

-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2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목포시장(지역경제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의견제출 사항

-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-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에는 법인·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- 기타 참고사항

나. 의견제출처 : 58613, 전남 목포시 양일로 203(용당동) 목포시청 지역경제과

다. 제출방법 : 우편, 팩스(061-270-3592), 직접방문 등

12. 기타사항

-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홈페이지(<http://www.mokpo.go.kr>)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목포시청 지역경제과(061-270-8785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목포시 규칙 제 호

목포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

목포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- ③ 조례 제7조에 따른 상품권 할인구매는 개인의 경우 종이지역화폐는 월간 70만원, 연간 400만원을 초과할 수 없고, 전자지역화폐는 월간 70만원을 초과 할 수 없으며 연간 할인 구매 한도는 적용 하지 않을 수 있다. 법인의 경우 반기별 1,000만원을 초과 할 수 없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<신·구조문대비표>

현행	개정안
제11조(할인가매 및 수수료) ① <생략> ② <생략> ③ 조례 제7조에 따른 상품권 할인가매는 개인의 경우 월간 70만원, 연간 4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. 법인의 경우반기별 1,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.	제11조(할인가매 및 수수료) ① <현행과 같음> ② <현행과 같음> ③ <u>조례 제7조에 따른 상품권 할인가매는 개인의 경우 종이지역화폐는 월간 70만원, 연간 400만원을 초과할 수 없고, 전자지역화폐는 월간 7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연간 할인가매 한도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. 법인의 경우 반기별 1,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.</u>

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☐ 규 칙 명 : 목포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

○ 성명(단체명) : (서명 또는 인)

○ 주 소 :

○ 전 화 번 호 :

규칙안 항목별 내용	찬성여부		의견(사유)	기타 참고사항
	찬성	반대		